

법 과 대 학

법학부

- 법학 전공
- 지적재산권학 전공

법학부 교과과정

법학전공, 지적재산권학전공

구분 \ 내용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학 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	2	1	2	1	2	1	2	
교 양	대학교양필수	UE 105	대학영어 I		2	○								
		UE 106	대학영어 II		2		○							
		UE 104	영문강독		2			○						
		UE 125	인문사회계열 글쓰기와 토론		3		○							
		UE 131	생활한문		1	○								
	소계				10									
	학부교양필수	계열교양영역	DG 001	법학입문		3	○							
			DG 024	법률문장론		2	○							
			DG 026	법률영어		2	○							
			DG 032	법률정보실무실습		2	○							
			DG 007	지식산업과법		3		○						
		전공기초영역	DG 027	민법총칙		4		○						
			DG 028	헌법 I		3		○						
			DG 029	형법총론		4			○					
			DG 030	채권각론		3			○					
			DG 031	산업재산권법		3			○					
		일반교양영역	YN 215	자연과학의 이해	택2	6								
			YP 023	경영학의 이해										
			YS 148	민주행정의 이해										
			YS 183	사회학의 이해										
YS 307			경제학의 이해											
YS 320	정치학의 이해													
YS 376	논리학의 이해													
YS 406	철학의 이해													
소계				35										
합 계				45										
전공	필수			9										
		선택		전공심화과정	45									
			다중전공과정	33										
	합계		전공심화과정	54										
			다중전공과정	42										
일반선택			전공심화과정	36										
			다중전공과정	48										
총 이수학점				135										
비 고		1. 다중전공과정이란 복수·부·연계·복합전공 이수자를 의미하며 주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42학점 이수로 학위취득 가능함. 2. 전공심화과정이란 위 다중전공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을 말하며 전공5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학위취득 가능함. 3. 일반교양영역은 성적표에 교선으로 표기되나, 교필로 인정됨.												

법학전공 소개

■ 전공소개

법학전공은 법학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전문가 양성을 주목적으로 1977년 개설되었다. 그 후 1981년 석·박사과정도 개설되었으며, 1998년 9월부터 법정대학에서 법과대학으로 분리되어 법과대학 법학부로 운영되고 있다. 법학전공은 전문적 법학교육을 위하여 전공의 세분화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법조인 양성과정으로서의 기본교과과정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각종 고시에 등용되는 학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고시반의 우수학생 및 1차 이상 합격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학구열 고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교육목적

법학의 전문적 연구와 교육을 통해 법치주의 구현과 법의 생활화 그리고 법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지성인 배출과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 전문적 법학교육을 위한 전공의 세분화
- 전공의 심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법조인 양성과정으로서의 기본교과과정의 강화
- 우수학생 양성과정으로서의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활성화

■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편제되어 있다. 대학원 과정을 공법전공과 사법전공으로 나누어 전문적인 법학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학부과정에서의 전공강화를 위하여 전공과목의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을 개설하고 있다.

■ 졸업 후 진로

교과과정, 학생활동 등을 마친 졸업생들은 각종 국가고시와 자격시험을 거쳐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국가공무원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체나 은행 그리고 증권회사의 법률관계 부서와 특허업무부서에 근무하는 등 전공과 관련된 사회진출에 매우 활발하다.

■ 연락처 : 전화 032-860-7920, 팩스 032-860-7914

■ 위치 : 로스쿨관 129호

법학전공 교과목

영역	종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수학기 (학년-학기)	비고
공동인정 영역	전선	DG 201	헌법Ⅱ	3(3)	2-1	
		DG 214	저작권법	3(3)	2-1	
		DG 016	채권총론	3(3)	2-2	
		DG 018	물권법	3(3)	2-2	
		DG 202	상법총칙·상행위	3(3)	2-2	
		DG 203	형법각론	3(3)	2-2	
	전필	DG 014	행정법1	3(3)	3-1	
		DG 301	민사소송법1	3(3)	3-1	
		DG 302	회사법	3(3)	3-1	
	전선	DG 303	국제법Ⅰ	3(3)	3-1	
		DG 304	노동법Ⅰ	3(3)	3-1	
		DG 316	상표법	3(3)	3-1	
		DG 409	법여성학	3(3)	3-1	
		DG 315	특허법Ⅰ	3(3)	3-2	
		DG 015	행정법Ⅱ	3(3)	3-2	
		DG 020	민사소송법Ⅱ	3(3)	3-2	
		DG 307	국제법Ⅱ	3(3)	3-2	
		DG 308	어음수표법	3(3)	3-2	
		DG 309	국제사법	3(3)	3-2	
		DG 310	노동법Ⅱ	3(3)	3-2	
		DG 313	경제법	3(3)	3-2	
		DG 314	부정경쟁방지법	3(3)	3-2	
		DG 401	형사소송법	3(3)	4	
		DG 402	민사소송법연습	3(3)	4	
		DG 403	국제거래법	3(3)	4	
		DG 404	인터넷과형법	3(3)	4	
		DG 405	기업법실무	3(3)	4	
		DG 406	문화산업법	3(3)	4	
		DG 407	전자거래법	3(3)	4	
		DG 408	인턴실습	2(2)	4	
법학전공 인정영역	전선	DH 221	친족상속법	3(3)	3-1	
		DH 427	헌법판례	3(3)	3-1	
		DH 439	형사연습및판례	3(3)	3-2	
		DH 327	민사연습입문	3(3)	3,4	
		DH 430	형사정책	3(3)	3,4	
		DH 220	법제사	3(3)	3,4	
		DH 224	영미법	3(3)	3,4	
		DH 323	비교법학	3(3)	3,4	
		DH 328	법철학	3(3)	3,4	
		DH 434	법사회학	3(3)	3,4	
		DH 440	영어원강	3(3)	3,4	
		DH 441	미국법개론	3(3)	3,4	
		DH 461	지방자치법	3(3)	3,4	
		DH 901	법률상담실습	1(1)	3,4	

영역	종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수학기 (학년-학기)	비고
법학전공 인정영역	전선	DH 330	헌법연습	3(3)	4	
		DH 332	세법	3(3)	4	
		DH 422	교통법	3(3)	4	
		DH 423	보험해상법	3(3)	4	
		DH 424	민사판례	3(3)	4	
		DH 425	사회법판례	3(3)	4	
		DH 426	국제법판례	3(3)	4	
		DH 428	민사연습	3(3)	4	
		DH 429	행정법판례	3(3)	4	
		DH 433	상사판례	3(3)	4	
		DH 435	민사실무	3(3)	4	
		DH 438	한국과국제법	3(3)	4	
		DH 442	형사모의재판	2(2)	4	
		DH 443	민사모의재판	2(2)	4	
		DH 444	민법특강	3(3)	4	
		DH 446	상법특강	3(3)	4	
		DH 447	항공운송법	3(3)	4	
		DH 448	모의헌법재판	2(2)	4	
		DH 449	인권법	3(3)	4	
		DH 450	국제법연습	3(3)	4	
		DH 451	국제경제법	3(3)	4	
		DH 452	형법특강	3(3)	4	
		DH 453	형사소송법연습	3(3)	4	
		DH 454	환경법	3(3)	4	
		DH 455	외교와 국제법	3(3)	4	
		DH 456	유럽연합법 입문	3(3)	4	
		DH 457	환경법과 환경행정	3(3)	4	
		DH 458	아시아와법	3(3)	4	
		DH 459	중국법의 이해	3(3)	4	
		DH 460	법학특강	3(3)	4	
		DH 462	금융거래법	3(3)	4	
		DH 463	국제통상법과 정책	3(3)	4	
		DH 464	자본시장론	3(3)	4	
		DH 465	통상분쟁해결사례와 이론	3(3)	4	

□ Selective Track System □

■ 사법시험 등의 시험 준비를 희망할 경우의 이수 필요 교과목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DG 027 DG 028	민법총칙 헌법 I	1-2	DG 015 DG 020	행정법 II 민사소송법 II	3-2
DG 029 DG 030 DG 201	형법총론 채권각론 헌법 II	2-1	DG 308 DG 309 DG 313	어음수표법 국제사법 경제법	
DG 016 DG 018 DG 202 DG 203	채권총론 물권법 상법총칙·상행위 형법각론	2-2	DH 327 DH 430	민사연습입문 형사정책	
DG 014 DG 301 DG 302 DG 303 DG 304 DH 221 DH 439	행정법 I 민사소송법 I 회사법 국제법 I 노동법 I 친족상속법 형사연습및판례	3-1	DG 401 DG 403 DH 328 DH 330 DH 423 DH 424 DH 428	형사소송법 국제거래법 법철학 헌법연습 보험해상법 민사판례 민사연습	
					4

■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할 경우 이수 필요 교과목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DG 027 DG 028	민법총칙 헌법 I	1-2	DG 014 DG 301	행정법 I 민사소송법 I	3-1
DG 029 DG 030 DG 201	형법총론 채권각론 헌법 II	2-1	DG 302 DG 303	회사법 국제법 I	
DG 016 DG 018 DG 202 DG 203	채권총론 물권법 상법총칙·상행위 형법각론	2-2	DG 015 DG 020 DG 308 DG 313	행정법 II 민사소송법 II 어음수표법 경제법	3-2
			DG 401	형사소송법	4-1

■ 전공별 추가 이수 필요교과목

대학원 전공	교과목
공법전공	형사정책, 국제법 II, 헌법연습, 형사연습 및 판례
사법전공	국제사법, 노동법 II, 상사판례, 국제거래법, 세법, 민사연습입문, 민사연습, 민사소송법연습, 민사판례
지적재산권학전공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저작권법

■ 일반회사에 취업을 지원할 경우 이수 필요 교과목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학년-학기
DG 027 DG 028	민법총칙 헌법 I	1-2	DG 014 DG 301	행정법 I 민사소송법 I	3-1
DG 029 DG 030 DG 201	형법총론 채권각론 헌법 II	2-1	DG 302 DG 303 DG 304	회사법 국제법 I 노동법 I	
DG 016 DG 018	채권총론 물권법	2-2	DG 308	어음수표법	3-2
DG 202 DG 203	상법총칙·상행위 형법각론		DH 332 DH 423 DH 435	세법 보험해상법 민사실무	4

- ❖ 경상대학, 경영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
: 회계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경영학원론, 재무관리, 인사관리, 노사관계론, 국제금융론, 경제학원론
- ❖ 사회과학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
: 조직이론, 사회심리학

□ 부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과정 □

■ 부전공분야

- 타 학부(과) 학생 : 아래의 선수지정과목 중 최소 3과목을 포함하여 전공학점의 최소 취득 학점은 21 학점으로 한다.
- 지재권전공 학생 : 전공필수 9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취득학점은 21학점으로 한다.

■ 복수전공 관련 사항

- 타 학부(과) 학생 : 선수지정과목(17학점) 및 법학전공 필수 9학점을 포함하여 법학전공 교과목의 공통인정영역 또는 전공인정영역에서 16학점 이상, 총 4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선수지정과목

구분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	2	1	2	1	2	1	2
학부 교양 필수	DG 027 DG 028 DG 029 DG 030 DG 031	민법총칙 헌법 I 형법총론 채권각론 산업재산권법	17		○ ○						

- 법학부 학생 : 법학부 학생들은 법학전공과 지적재산권학 전공을 복수전공할 수 있다. 교과과정에서 전공필수 9학점을 포함하여 총 4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42학점은 주전공으로 이수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학점으로 계산되지 않아야 한다.

■ 법학부 주관 연계전공 (경영법학사과정)

- 법학부 주관 하에 경영대학 경영학부와 연계하여 아래의 전공과정을 개설한다.
- 학위 및 자세한 사항은 연계전공에 관한 법학부 내규에 따른다.

■ 연계전공에 관한 법학부 내규

제 1 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2조의 1에 따라 시행하는 연계전공 중 법학부의 전공과정에서 주관하는 경영법학사 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법학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은 법과대학 법학부, 경영대학 경영학부가 연계하여 구성한 전공과정을 말한다.
2. “제 1전공”이라 함은 소속학부(과)에서 학생이 이수하는 주전공을 말한다.
3. “연계전공 주관전공(이하 ”주관전공“)이란 연계과정을 마련하고 학사행정을 지원하는 전공을 말하며, 주관전공은 법과대학 법학전공으로 한다.

제 3 조(신청 자격) 아래의 학생은 상기 연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학부 소속 학생 또는 경영학부 소속 학생
2. 법학 또는 경영학의 복수전공 및 이수 신청한 학생

제 4 조(신청 및 허가) ①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3차학기 또는 5차학기 등록이전에 정해진 기간에 주관전공에 연계과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전공에서는 연계과정 이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법과대학 경유하여 교무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조(이수과목 및 학점) 연계과정을 허가받은 학생은 [별표1]의 1), 2) 중 하나의 교과과정에서 총 42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 6 조(학위수여) 제 1전공에서 제시한 졸업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연계과정의 이수조건을 갖춘자에 대하여 제 1전공 학위와 경영법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 7 조(연계전공위원회) ① 연계전공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학부 법학전공 소속 3인 및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소속 3인의 교수로 구성하며 법학전공주임이 위원장이 된다.

제 8 조(기타)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학칙시행세칙, 복수연계·복합전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개정된 내규는 2005. 1. 14.부터 시행한다.

[별표1]

□ 경영법학 연계전공 교과과정 □

■ 법과대학 법학부 학생은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관련전공	영역	종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법학부	공통	전선	DG 016	채권총론	3(3)	3과목(9학점)이상 취득
	공통	전선	DG 018	물권법	3(3)	
	공통	전선	DG 202	상법총칙·상행위	3(3)	
	공통	전선	DG 304	노동법 I	3(3)	
	공통	전선	DG 308	어음수표법	3(3)	
	공통	전선	DG 313	경제법	3(3)	
	법학	전선	DH 423	보험해상법	3(3)	
	법학	전선	DH 332	세법	3(3)	
	공통	전선	DG 020	민사소송법 II	3(3)	3과목(9학점)이상 취득
	공통	전선	DG 309	국제사법	3(3)	
	법학	전선	DH 424	민사판례	3(3)	
	법학	전선	DH 444	민법특강	3(3)	
	법학	전선	DH 464	자본시장론	3(3)	
경영학부	학문	전필	CK 108	재무관리	3(3)	4과목(18학점) 필수
	학문	전필	CK 207	인사관리	3(3)	
	학문	전필	CK 314	재무회계	3(3)	
	학문	전필	CK 408	생산관리	3(3)	
	학문	전필	CK 512	마케팅원론	3(3)	
	학문	전필	CK 611	경영정보론	3(3)	
	학문	전선	전공선택과목에서 선택			2과목(6학점)이상 취득

※ 2005학년도 1학기에 허가받은 학생은 'DG 031 산업재산권법'을 연계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경영학부 경영학전공이 주전공인 학생은 아래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관련전공	영역	종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법학부	전공기초	전선	DG 027	민법총칙	4(4)	3과목(9학점)이상 취득
	전공기초	전선	DG 030	채권각론	3(3)	
	공통	전선	DG 016	채권총론	3(3)	
	공통	전선	DG 018	물권법	3(3)	
	공통	전선	DG 202	상법총칙·상행위	3(3)	3과목(9학점)이상 취득
	공통	전필	DG 302	회사법	3(3)	
	공통	전선	DG 308	어음수표법	3(3)	
	법학	전선	DH 423	보험해상법	3(3)	
	전공기초	교필	DG 031	산업재산권법	3(3)	2과목(6학점)이상 취득
	공통	전필	DG 301	민사소송법 I	3(3)	
	공통	전선	DG 304	노동법 I	3(3)	
	공통	전선	DG 313	경제법	3(3)	
	법학	전선	DH 332	세법	3(3)	
경영학부	학문	전선	전공선택과목에서 선택			6과목(18학점)이상 취득

< 동일대체 교과목 >

법학부 개설교과목			경영학부 개설교과목		
종 별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종 별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전선	DG 302	회사법	전선	CK 707	기업법
전선	DH 332	세법	전선	CK 305	세법개론

■ 법학부 주관 연계전공 (물류법학사과정)

- 법학부 주관 하에 아태물류학부 물류학전공과 연계하여 아래의 전공과정을 개설한다.
- 학위 및 자세한 사항은 연계전공에 관한 법학부 내규에 따른다.

■ 연계전공에 관한 법학부 내규

제 1 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2조의 1에 따라 시행하는 연계전공 중 법학부의 전공과정에서 주관하는 물류법학사 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1. “물류법학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은 법과대학 법학, 지적재산권학 전공 및 아태물류학부 물류학전공이 연계하여 구성한 전공과정을 말한다.

2. “제1전공”이라 함은 소속학부(과)에서 학생이 이수하는 주전공을 말한다.

3. “연계과정 주관전공(이하 “주관전공”)이란 연계과정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학사행정을 지원하는 전공을 말하며, 주관전공은 법과대학 법학전공으로 한다.

제 3 조(신청자격) 아래의 학생은 상기 연계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법과대학 소속 학생

② 아태물류학부 소속 학생

③ 법학, 지적재산권학전공 및 물류학전공의 복수전공자 및 이수 신청한 학생

제 4 조(신청 및 허가) ①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3차 학기 또는 5차 학기등록 이전에 정해진 기간에 주관전공에 연계과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전공에서는 연계과정 이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법과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조(이수과목 및 학점) 연계과정을 허가받은 학생은 [별표]의 1), 2) 중 하나의 교과과정에 서 전공필수 12학점을 포함하여 총 42학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제 6 조(학위수여) 제1전공에서 제시한 졸업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연계과정의 이수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제1전공 학위와 물류법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 7 조(연계전공위원회) ① 연계전공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학부 법학전공 소속 3인 및 아태물류학부 물류학전공 소속 3인의 교수로 구성하며 법학전공주임이 위원장이 된다.

제 8 조(기타)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학칙시행세칙, 복수연계·복합전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개정된 내규는 2006. 3. 1부터 시행한다.

[별표1]

□ 물류법학 연계전공 교과과정 □

■ 1) 아태물류학부 소속 학생이 수강하여야 할 교과과정 (42학점 이상)

관련전공	영역	종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법학부	계열기초	전선	DG 007	지식산업과법	3(3)	10과목(30학점) 반드시 이수
	전공기초	전선	DG 030	채권각론	3(3)	
		전선	DG 031	산업재산권법	3(3)	
법학	공동인정	전선	DG 020	민사소송법 II	3(3)	
		전선	DG 014	행정법 I	3(3)	
		전선	DG 015	행정법 II	3(3)	
		전선	DG 202	상법총칙·상행위	3(3)	
		전선	DG 301	민사소송법 I	3(3)	
		전선	DG 302	회사법	3(3)	
		전선	DG 309	국제사법	3(3)	
		전선	DG 313	경제법	3(3)	
		전선	DG 403	국제거래법	3(3)	
		전선	DG 407	전자거래법	3(3)	
		전선	(신설예정)	육상물류법	3(3)	
		전선	(신설예정)	해상물류법	3(3)	
		전선	(신설예정)	항공물류법	3(3)	
	법학전공인정	전선	DH 422	교통법	3(3)	
		전선	DH 423	보험해상법	3(3)	
		전선	DH 447	항공운송법	3(3)	
		전선	DH 451	국제경제법	3(3)	
지적재산 권학	공동인정	전선	DG 214	저작권법	3(3)	
	지적재산권학 인정	전선	DI 424	인터넷과지적재산권법	3(3)	
물류학	국제물류	전필	CP 417	국제물류론	3(3)	4과목(12학점) 반드시 이수
		전필	CP 403	해상운송론	3(3)	
		전필	CP 404	항공운송론	3(3)	
	물류정책· 경제	전필	CP 504	물류법규	3(3)	

■ 2) 법과대학 소속 학생이 수강하여야 할 교과과정 (42학점 이상)

관련전공	영역	종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물류학	계열교양	전선	CP 003	물류학의 이해	3(3)	10과목 (30학점) 반드시 이수
	물류관리 /SCM	전선	CP 101	물류관리론	3(3)	
		전선	CP 202	공급사슬관리	3(3)	
	국제물류	전선	CP 417	국제물류론	3(3)	
		전선	CP 403	해상운송론	3(3)	
		전선	CP 404	항공운송론	3(3)	
		전선	CP 405	국제복합운송	3(3)	

관련전공	영역	종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물류산업 /경제	전선	CP 515	물류경제론	3(3)	
		전선	CP 502	물류정책론	3(3)	
		전선	CP 503	물류산업론	3(3)	
		전선	CP 504	물류법규	3(3)	
	물류시스템 /정보	전선	CP 201	물류시스템분석	3(3)	
		전선	CP 213	화물운송시스템	3(3)	
법학	법학전공인정	전필	DH 422	교통법	3(3)	4과목 (12학점) 반드시 이수
		전필	DH 423	보험해상법	3(3)	
		전필	DH 447	항공운송법	3(3)	
		전필	DH 451	국제경제법	3(3)	

□ 졸업관련 사항 □

■ 졸업요구조건

구분	졸업요구학점	교양	전공	잔여학점
다중전공	135	45	42	48
심화전공	135	45	54	36

- 학위수여요건 : 없음
- 교과과정구분별 졸업학점
 - 1999학년도 이전 신입생: 전공 39학점 이상 이수
 - 2000~ 2003학년도 신입생 및 1학년 복학생 : 전공 39학점 이상 이수
 -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1학년 복학생 : 단일전공 54학점 이상 이수,
다중전공 42학점 이상 이수.
 - 2000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2002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은 [졸업인증제]적용받음.
 - 2010년 2월 이후 졸업생은 [졸업학점 135학점]적용받음.

■ 수여학위

- 법학전공(법학사)

지적재산권학전공 소개

■ 전공소개

지적재산권학전공은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서 기술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기술개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인 지적재산전문가의 양성을 주목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 예로 변리사시험위주의 과목과 특허실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지향하고 필수를 최소화하여 학생선택의 폭을 넓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998년 3월 법정대학내 40명 정원의 산업재산권학과로 개설되었으며, 같은 해 9월 법정대학이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 분리 개편됨에 따라 법과대학내에 속하게 되었다. 2000년 3월 법학부로 편입되어 지적재산권학전공으로 편제되었다.

■ 교육목적

정보화사회, 지가사회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지적재산권전공은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서의 기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기술개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양성을 주목적으로 교육에 있어서도 변리사 시험과목 중심과 특허실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교육하고 있다

■ 교육과정

1학년에서는 언어영역, 사회과학영역, 일반선택영역 등 3개의 영역의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며 2학년 부터 본격적으로 법학과 지적재산권교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특히 지적재산권학전공의 교육과정은 실무 과정은 물론 인턴십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필수과목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과목을 수강하게 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그 장점이 있다. 또한 대학원과정으로 지적재산권학전공을 두어 전문적인 교육에 주력한다.

■ 졸업 후 진로

각종 국가고시와 자격시험을 거쳐 변리사, 특허청공무원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체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 연락처 : 전화 032-860-8800, 팩스 032-860-7914

■ 위치 : 로스쿨관 129호

지적재산권학전공 교과목

영역	종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이수학기 (학년-학기)	비고
공통인정 영역	전선	DG 201	헌법Ⅱ	3(3)	2-1	
		DG 016	채권총론	3(3)	2-2	
		DG 018	물권법	3(3)	2-2	
		DG 202	상법총칙·상행위	3(3)	2-2	
		DG 203	형법각론	3(3)	2-2	
	전필	DG 214	저작권법	3(3)	2-1	
		DG 315	특허법1	3(3)	3-2	
		DG 316	상표법	3(3)	3-1	
	전선	DG 014	행정법1	3(3)	3-1	
		DG 301	민사소송법1	3(3)	3-1	
		DG 302	회사법	3(3)	3-1	
		DG 303	국제법Ⅰ	3(3)	3-1	
		DG 304	노동법Ⅰ	3(3)	3-1	
		DG 409	법여성학	3(3)	3-1	
		DG 015	행정법Ⅱ	3(3)	3-2	
		DG 020	민사소송법Ⅱ	3(3)	3-2	
		DG 307	국제법Ⅱ	3(3)	3-2	
		DG 308	어음수표법	3(3)	3-2	
		DG 309	국제사법	3(3)	3-2	
		DG 310	노동법Ⅱ	3(3)	3-2	
		DG 313	경제법	3(3)	3-2	
		DG 314	부정경쟁방지법	3(3)	3-2	
		DG 401	형사소송법	3(3)	4	
		DG 402	민사소송법연습	3(3)	4	
		DG 403	국제거래법	3(3)	4	
		DG 404	인터넷과형법	3(3)	4	
		DG 405	기업법실무	3(3)	4	
		DG 406	문화산업법	3(3)	4	
		DG 407	전자거래법	3(3)	4	
		DG 408	인터넷실습	2(2)	4	
지적재산권학 전공인정영역	전선	DI 222	특허법Ⅱ	3(3)	3-1	
		DI 432	특허영어	3(3)	3-1	
		DI 433	심사심판실무	3(3)	3-2	
		DI 438	디자인보호법	3(3)	3-2	
		DI 326	지적재산권특강	3(3)	4	
		DI 327	특허법연습	3(3)	4	
		DI 420	지적재산권연습	3(3)	4	
		DI 422	정보통신과 법	3(3)	4	
		DI 424	인터넷과지적재산권법	3(3)	4	
		DI 426	컴퓨터법	3(3)	4	
		DI 428	국제지적재산권	3(3)	4	
		DI 429	라이센싱실무실습	3(3)	4	
		DI 430	특허정보실무	3(3)	4	
		DI 431	명세서작성실무	3(3)	4	
		DI 434	특허전략	3(3)	4	
		DI 435	지적재산권모의재판	3(3)	4	
		DI 436	미래산업창업과지재권	3(3)	4	
		DI 437	소프트웨어 저작권	3(3)	4	

□ Selective Track System □

■ 변리사 등의 시험 준비를 희망할 경우의 이수 필요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년-학기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년-학기
DG 007 DG 027	지식산업과 법 민법총칙	1-2	DG 020 DG 314	민사소송법Ⅱ 부정경쟁방지법	3-2
DG 030	채권각론	2-1	DI 222 DI 438	특허법Ⅱ 디자인보호법	
DG 016 DG 018 DG 214	채권총론 물권법 저작권법	2-2	YN 217 YN 226	화학의 이해 지구과학의 이해	
DG 311 DG 315 DG 316 YN 216 YN 301	민사소송법Ⅰ 특허법Ⅰ 상표법 물리학의 이해 생물의 세계	3-1	DI 327 DI 420 DI 433	특허법연습 지적재산권연습 심사심판실무	4

■ 특허관리사를 취득하기를 희망할 경우의 이수 필요 교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년-학기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년-학기
DG 007 DG 027	지식산업과 법 민법총칙	1-2	DG 020 DG 311 DG 315	민사소송법Ⅱ 민사소송법Ⅰ 특허법Ⅰ	3-1
DG 030	채권각론	2-1	DG 316 DI 222	상표법 특허법Ⅱ	
DG 016 DG 018 DG 214	채권총론 물권법 저작권법	2-2	DI 438 DI 432	디자인보호법 특허영어	
			DI 430 DI 429 DI 434	특허정보실무 라이센싱실무실습 특허전략	4

□ 부전공·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과정 □

■ 부전공분야

- 부전공의 경우 [특허법Ⅰ,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지적재산권학 전공 학점의 최소 취득 학점은 21학점으로 한다.

■ 복수전공 관련 사항

- 타 학부(과) 학생 : 선수지정과목(17학점) 및 지적재산권학전공 필수 9학점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학전공 교과목의 공통인정영역 또는 전공인정영역에서 16학점 이상, 총 4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선수지정과목

구분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	2	1	2	1	2	1	2
학부 교양 필수	DG 027	민법총칙	17		○						
	DG 028	헌법 I			○						
	DG 029	형법총론				○					
	DG 030	채권각론				○					
	DG 031	산업재산권법				○					

- 법학부 학생 : 법학부 학생들은 법학전공과 지적재산권학 전공을 복수전공할 수 있다. 교과과정에서 전공필수 9학점을 포함하여 총 4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42학점은 주전공으로 이수한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학점으로 계산되지 않아야 한다.

■ 법학부 지적재산권학 주관 연계전공(과학기술법학사-변리사관련 연계전공)

- 법학부 지적재산권학전공 주관 하에 공과대학과 이과대학의 모든 전공과 연계하여 아래의 전공과정을 개설한다.
- 학위 및 자세한 사항은 연계전공에 관한 지적재산권학 전공 내규에 따른다.

■ 연계전공에 관한 법학부 지적재산권학 전공 내규

제 1 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2조의 1에 따라 시행하는 연계전공 중 법학부의 지적재산권학 전공과정에서 주관하는 과학기술법학사 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과정의 종류) 법과대학 법학부 지적재산권학 전공은 공과대학 및 이과대학의 모든 전공과 연계하여 과학기술법학사 과정을 둔다.

제 3 조(신청자격) 법과대학, 공과대학 및 이과대학의 각 전공이 주 전공인 학생

제 4 조(신청 및 허가) ① 연계과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수 희망과목을 작성하여 주관전공에 신청하고 제7조의 연계전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전공에서는 연계과정 이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법과대학 경유하여 교무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조(교과과정) 연계과정을 허가받은 학생은 [별표1]의 1), 2) 중 하나의 교과과정에서 1학점 이상과 3)의 12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소속 대학의 최소 전공 졸업학점보다 9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취득하여 총 4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6 조(학위수여 요건) 과학기술법학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속 대학이나 전공의 규정에 의한 졸업요건을 만족시킬 것
2. 제5조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며, 이 교과과정에 대하여 B0(3.0) 이상의 평점을 취득 할 것.

제 7 조(연계전공위원회) ① 연계전공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학부 지적재산권학 전공 소속 3인, 공과대학 소속 1인, 이과대학 소속 1인의 교수로 구성하며 지적재산권학 전공주임이 위원장이 된다.

제 8 조(기타)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학칙시행세칙, 복수·연계·복합전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개정된 내규는 2005. 1. 14.부터 시행한다.

[별표1]

□ 과학기술법학 연계전공 교과과정 □

■ 1) 법과대학 지적재산권학전공이 주전공인 학생은 아래의 과정에서 최소 2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관련전공	영역	종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자연 과학 계열	계열전공 기초	교필	BM 101	물리학 I	3(3)	7과목(21학점) 반드시 이수
			BM 103	물리학실험 I	1(2)	
			BM 102	물리학 II	3(3)	
			BM 104	물리학실험 II	1(2)	
			BN 101	화학 I	3(3)	
			BN 103	화학실험 I	1(2)	
			BN 102	화학 II	3(3)	
			BN 104	화학실험 II	1(2)	
			BO 101	생물학 I	3(3)	
			BO 103	생물학실험 I	1(2)	
			BO 102	생물학 II	3(3)	
			BO 104	생물학실험 II	1(2)	
해양	사회 및 자연과학의 이해	교선	YN 225	천문학의이해	3(3)	
			YN 226	지구과학의이해	3(3)	

■ 2)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의 각 전공이 주전공인 학생인 지적재산권학 전공의 다음의 과목 중 특허법1과 상표법 6학점은 필수과목, 나머지 과목 중 최소 15학점은 선택과목으로 이수하여, 총 2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전공	영역	종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지적 재산권학 전공	공통	전필 전필	DG 315	특허법 I	3(3)	2과목(6학점)
			DG 316	상표법	3(3)	
	전공기초	교필	DG 027	민법총칙	4(4)	5과목(15학점)
			DG 030	채권각론	3(3)	
			DG 031	산업재산권법	3(3)	
	공통	전선 전선 전선 전필 전선 전선	DG 016	채권총론	3(3)	
			DG 018	물권법	3(3)	
			DG 020	민사소송법Ⅱ	3(3)	
			DG 214	저작권법	3(3)	
			DG 311	민사소송법Ⅰ	3(3)	
			DG 314	부정경쟁방지법	3(3)	
	지적재산권학	전선 전선	DI 222	특허법Ⅱ	3(3)	
			DI 438	디자인보호법	3(3)	

■ 3) 연계전공을 허가받은 모든 학생은 다음의 교과목 12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관련전공	영역	종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지적 재산권학 전공	지적 재산권학	전선	DI 429	라이선싱실무실습	3(3)	4과목(12학점) 필수
			DI 430	특허정보실무	3(3)	
			DI 431	명세서작성실무	3(3)	
			DI 432	특허영어	3(3)	

□ 졸업관련 사항 □

■ 졸업요구조건

구분	졸업요구학점	교양	전공	잔여학점
다중전공	135	45	42	48
심화전공	135	45	54	36

- 학위수여요건 : 없음
- 교과과정구분별 졸업학점
 - 1999학년도 이전 신입생: 전공 39학점 이상 이수
 - 2000~ 2003학년도 신입생 및 1학년 복학생 : 전공 39학점 이상 이수
 -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1학년 복학생 : 단일전공 54학점 이상 이수,
다중전공 42학점 이상 이수.
 - 2000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2002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은 [졸업인증제]적용받음.
 - 2010년 2월 이후 졸업생은 [졸업학점 135학점]적용받음.

■ 수여학위

- 지적재산권학전공(법학사)